

#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
2022 개정 교육과정 변경사항 (중1,고1 적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영역 재구조화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율활동 → 자율·자치활동, '봉사활동' 영역 탭 삭제</li> <li>- (봉사활동) 활동 수준으로 <b>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활동 편성 가능</b></li> </ul> 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        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학교(1~4학년)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은 <b>봉사활동 영역 자체가 제외됨</b>에 따라 자율·자치활동/ 동아리활동/진로활동 영역에서 봉사활동 가치를 담은 활동을 구성하여 자체 진행 후 해당 영역에 기재함         </div>														
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간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초(5-6학년)</th> <th>중</th> <th>고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권장 내용</td> <td>2년 통합 8시간 (연간기준 4시간)</td> <td>3년 통합 30시간 (연간기준 10시간)</td> <td>3년 통합 27시간 (연간기준 9시간)</td> <td rowspan="2">전년 동일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4">           ※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 실시 권장            ※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 시수를 2/3이상 편성 권장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초(5-6학년)	중	고	비고	권장 내용	2년 통합 8시간 (연간기준 4시간)	3년 통합 30시간 (연간기준 10시간)	3년 통합 27시간 (연간기준 9시간)	전년 동일	※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 실시 권장 ※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 시수를 2/3이상 편성 권장			
구분	초(5-6학년)	중	고	비고											
권장 내용	2년 통합 8시간 (연간기준 4시간)	3년 통합 30시간 (연간기준 10시간)	3년 통합 27시간 (연간기준 9시간)	전년 동일											
※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 실시 권장 ※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 시수를 2/3이상 편성 권장															
「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」 구성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」 구성 및 운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교실정에 맞도록 5명 이상 구성 권장</li> <li>- 역할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
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지도 절차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3">준비</th> <th>실행</th> <th>평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전교육</td> <td>계획서 제출</td> <td>학교승인</td> <td rowspan="2">⇒ 안전사고 유의,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</td> <td rowspan="2">⇒ (학생) 봉사확인서 제출 (교사) 확인서 정리, 평가</td> </tr> <tr> <td>프로그램 안내 및 사전협의, 지도</td> <td>구체적 활동계획 포함</td> <td>사전 학교장 승인 필요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준비			실행	평가	사전교육	계획서 제출	학교승인	⇒ 안전사고 유의,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	⇒ (학생) 봉사확인서 제출 (교사) 확인서 정리, 평가	프로그램 안내 및 사전협의, 지도	구체적 활동계획 포함	사전 학교장 승인 필요	
준비			실행	평가											
사전교육	계획서 제출	학교승인	⇒ 안전사고 유의,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	⇒ (학생) 봉사확인서 제출 (교사) 확인서 정리, 평가											
프로그램 안내 및 사전협의, 지도	구체적 활동계획 포함	사전 학교장 승인 필요													
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 기준 제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시) 헌옷 모으기,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, 폐휴대폰 수거 등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
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기준 제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<b>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 활동은 인정 가능</b>(학교 연계 필수 조건 아님) 예시) 마스크 제작(캠페인활동), 목도리 제작(이웃돕기활동), 모자 뜨기(이웃돕기활동) 등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

## 참고자료 1

##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기준

◎ 학생의 모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과 「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에 근거해 인정함

### 1.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(1365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에서 전송된 봉사활동의 인정

- 1365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「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에 위배될 경우 인정 불가
- 사전에 담임(담당)교사와 상담 등을 통하여 인정 기관, 활동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 후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
- 수시로 봉사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

### 2.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나이스로 연계된 봉사활동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

- 봉사활동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거나 간단한 경우, 입력되지 않은 채 전송된 경우 발생
- 학생이 봉사기관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여,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고, 학교에서는 수정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(이미 나이스로 전송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정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재전송하는 것은 시스템 상 불가하지만,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은 가능)
- 띄어쓰기 및 맞춤법 오류, &nbsp; , &gt;(난해한 부호) 등은 수정한 봉사활동 확인서 없이 담임교사가 수정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
-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

### 3. 봉사활동 시간과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중복

-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
-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학교행사(현장학습, 수련활동, 수학여행 등) 후 실시한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 
예) 자율활동(체육대회)을 7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2시간 실시하였다면 1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1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
- 동아리활동(자율동아리 포함)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. 또한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음.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,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

※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학교(1~4학년),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은 봉사활동 영역 자체가 제외됨에 따라 자율, 자치, 동아리, 진로 영역에서 봉사활동 가치를 담은 활동을 구성하여 자체 진행 후 해당 영역에 기재함

- 학생교육원 입소 시간, 교외체험학습 시간, 행사활동 시간, 동아리 활동 시간 등과 봉사활동 시간의 중복은 인정 불가

#### 4. 어린이집, 요양원,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

★ 학생,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반드시 필요 ★

- 어린이집, 요양원, 병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「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」에 근거함
- 어린이집, 요양원,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가능 기관의 조건
  - 어린이집: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
  - 노인요양병원: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, **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**
  - 노인요양원: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(**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**)
  - 병원: **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**, 법인이 운영하는 병·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**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** (병원 내 사회복지사, 사회공헌팀, 사회사업실(팀) 등이 관리하는 병원)
-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, 내용,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

#### 5. 민간기관·사설기관에서의 봉사

- 민간기관·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,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(단체)으로 활동영역 및 내용이 「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

#### 6.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

-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·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
-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 인정,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
- **봉사활동과 관련 없는 교육, 회의 참석, 평가단 참여,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**

#### 7. 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

-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
예) 헌옷 모으기,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, 폐휴대폰 수거, 모발 기부 등
- 단,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「사전교육-캠페인-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-기부-평가」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,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(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)

#### 8.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

-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(학교 연계는 필수 조건이 아님)  
예) 마스크 제작(캠페인활동), 목도리 제작(이웃돕기활동), 모자 뜨기(이웃돕기활동) 등
- 단, 봉사활동이 「사전교육-제작-평가」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,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금 없이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 인정.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
- 봉사활동 실적 자료(프로그램계획안, 활동 결과물 등)를 제출해야 하며, 물품 제작비 등을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부담하고 학생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 참여한 봉사시간만 인정

## 9.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

- 기부금 형태, 재료비 등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
- 어떠한 명칭으로든 비용(금품)을 납부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음(교통비, 식비, 재료비 등을 포함하며, 비용(금품)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음)
- 다만,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는 허용 가능.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 후 인정 여부 결정

## 10.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

- 학교교육과정 내에 편성하거나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한 봉사활동 모두 학교생활 기록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**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당해 학교장 명의로 발급**해야 함
- <참고자료 4> 봉사활동 각종 서식(예시) 참고

## 11.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의 출석 인정 결석 기간에 실시한 봉사활동

-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 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
- 예)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

## 12. 신입생의 입학 전(해당 학년도 3월 1일~입학식 전) 봉사활동 및 졸업생의 졸업 후 (해당 학년도 졸업식 이후~2월말) 봉사활동 인정

- 해당 기간의 봉사활동 인정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 제1항에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3항제3호에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봉사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. 입학식 이전, 졸업식 이후라도 학년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음
- 다만, 입학식 이전의 봉사활동에 한해 사전계획서를 입학식 후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음
- 예) A중학교에서 B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경우 3월 1일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B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A중학교의 졸업식 이후 2월 말에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A중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

## 13. 종업식 이후에 실시한 초등학교 1~5학년, 중고등학교 1~2학년의 봉사활동

- 재학생(초등학교 1~5학년, 중·고등학교 1~2학년)의 종업식 이후 2월 말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. 2월 말까지는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므로 당해 학년도 봉사활동으로 입력 가능함
-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후의 봉사활동실적은 진급처리 이후 다음 학년도에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서 입력하되, 정정 전 반드시 당해 학교의 **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(증빙서류 첨부)**를 거쳐야 함
- 종업식 이후, 다음 학년도 정정 등 행정적인 절차의 불편함을 이유로 **학년말 봉사활동을 금지하거나 다음 학년도에 인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**

#### 14. 징계 관련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

- 인정 불가
-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, 사회봉사,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
-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불가

#### 15. 봉사활동 시간에서 분 단위 인정 여부

-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,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. 다만, 동일 기관의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(누가기록 증빙자료 필요)

#### 16. 문화 공연 준비

-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(리허설) 인정
-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

#### 17. 행사 참여

-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(내빈이나 주차), 주변정리,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,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
- 정부·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

#### 18. 번역

- 공익적 목적으로 공식적 요청을 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번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인정
- ‘공식적 요청’이라 함은 학교에 요청한 공문,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활동 내용 등록, 공개된 홈페이지에 활동 내용 등록된 것 등을 의미
- 번역료 등의 수당을 받으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음
- 점자,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

#### 19. 선플 달기

- 선플달기운동본부 <http://www.sunfull.or.kr>
-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‘선플 달기’ 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
- 초 40자 이상, 중 50자 이상,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

#### 20. 학생이 실무담당자의 실인만 찍힌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인정 여부

-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(1365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를 이용하지 않고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에 한함

- 봉사활동확인서는 학생명, 학교명, 활동시간, 활동장소, 활동내용 및 의견, 확인자의 성명,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,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
- 다만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담임교사의 확인에 의해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음. 그러나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

## 21.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보관기관 및 보존기간

- 학기 중 학급담임 보관하다 학년말에 담당부서에서 수합 보관
- 학생 봉사활동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학생 봉사활동 계획서, 확인서도 이에 따름

## 22. 전출입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보관기관

-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과 실적 자료를 전입교로 송부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

## 23. 개인계획에 의한 비대면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

- 봉사활동이 「사전교육-실천-활동보고서 평가」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함
- 학생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주관기관이 확인(실시간 쌍방향, 영상 저장 등)한 경우 또는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(시작전, 실천, 결과)이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보고서 제출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인정 가능
- 실제 봉사활동한 시간만 인정하되, **학생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인정 가능**
- 학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 또는 인정

## 24. 헌혈

- 만 16세 이상, 체중이 남자 50kg,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
- 1회(전혈, 성분헌혈) 4시간 인정, 당해 학년도 **3회까지 인정**
- 평일에 했을 경우, 수업시간과 상관없이(7교시, 8교시를 했더라도) 4시간 인정
- 헌혈자 본인만 인정, 헌혈증서 양도 금지
- 봉사활동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,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(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,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)
-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동의서(소감록) 필요
- 학부모가 동의서(사후 확인서)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음. 단위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 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
- 헌혈활동이 나눔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

## 25.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

-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
-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
- 문예작품(그림, 글짓기) 공모전 응모
-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
- 인구조사 참여
-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
-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
-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
-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
-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
-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, 사후 모임
-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(예: 각종 기념식 행사 참석 등)
- 진로체험 관련 활동(예: 학생기자활동, 자치법정 등)
-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(예: 자치회의, 모의의회, 토론회, 평가단 등)
- 국제학업성취도 평가(PISA, TIMSS, ICILS 등)에 응시 학생 수행시간
-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미인정(※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-4(2019.1.2.)호)

## 26.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소양교육

-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(2시간 이내)은 실적으로 인정
-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,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인정 불가  
단, 봉사활동 시작 전에 꼭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1시간 인정 가능

## 27. 봉사활동 실비보상(교통비 8천원 등)이 있는 활동 인정 여부

-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 
단, 봉사활동 중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(식비를 받은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음)

## 28. 아파트 관리사무소, 부녀회, 경로당 등에서 실시된 봉사활동 인정 여부

-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주민(학생)만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미인정
- 부녀회와 노인정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관(단체)이 비영리기관(단체)이며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활동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 가능